"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"

등록번호	기획예산과-7027
등록일자	2016.5.4.
결 재 일 자	2016.5.4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기획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경제국장	부구청장	
강진규	공승호	김희주	김용운	전결 05/04 주윤중	
협 조 자	전산정보과장	김청호			

-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-

2016년 위원회 정비계획



■ 위원회 정비 방향

- 위원회 설립목적과 취지, 설치근거, 운영실적,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·폐합 등 정비 추진
- 목적 및 기능상 필요한 위원회이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 비상설화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비상설 전환
- 특정 성별 60% 초과 금지 규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수
- 📕 위원회 관리 시스템 현행화 (5월 중 시스템 기능개선 후 입력)
- **의 위원회 조례 제정 [별도 방침 수립]**
 - 주요내용
 - 위원회 설치 시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 마련
 - 위원 위촉 시 중복 위촉 및 장기 연임 제한 규정 마련

2016. 5.

강 남 구 (기획예산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					
관련 규정 및 근거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지방자치법 제116조(합의제 행정기관) 및 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					
추진 경위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• 기능이 유사하거나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운영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기능과 역할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					
예산 사항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·해당 사항 없음					
수 혜 자 및 범위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·대상 : 공무원 및 일반주민					
분 야 별 검토사항 〔계속: 〕 〔신규: 〕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					
타 기관 사 례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·해당사항 없음					
전 문 가 자 문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·해당사항 없음					

2016년 위원회 정비계획

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, 위원회 관리 시스템 현행화 및 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.

I 위원회 현황 및 문제점

■ 연도별 위원회 현황

(2015.12.31.기준)

구분	2012	2013	2014	2015
상설운영	79	84(+5)	87(+3)	91(+4)
대체운영	13	13	15(+2)	11(-4)
계	92	97(+5)	102(+5)	102(–)

■ 2015년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별 연도별 운영 현황

○ 총괄 (2015.12.31.기준)

онн	개최횟수(회)						
연번	소계	2013	2014	2015	평균		
상설운영 (91개기준)	1,385	459	472	454	461		
대체운영 (11개기준)	156	40	48	68	52		
계	1,541	499	520	522	513		

○ 상설 위원회별 개최횟수

(2015.12.31.기준)

연도	소계	0회	1~2회	3~4회	5회이상
2013	91	20	42	10	19
2014	91	15	49	8	19
2015	91	19	46	10	16

○ 비상설 위원회별 개최횟수

(2015.12.31.기준)

연도	소계	0회	1~2회	3~4호	5회이상
2013	11	6	2	1	2
2014	11	6	3	_	2
2015	11	3	5	_	3

【 운영관련 문제점 】

- 매년 상설 운영하는 위원회 수는 꾸준히 증가('12년 79개 → '15년 91개)하였으며, 상설 위원회 중 1년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('15년 19개)가 있어이에 대한 방안으로
 - ①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 필요
 - ② 위원회 현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현행화할 필요성이 있음
 - ③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원회 관리 조례 제정

Ⅱ 위원회 정비

■ 위원회 정비방향

- 위원회 설립목적과 취지, 설치근거, 운영실적,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·폐합 등 정비 추진
 -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회의 등으로 처리
 - 순수한 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
- 목적 및 기능상 필요한 위원회이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 비상설화
 - ※ 비상설화 : 위원을 상설 위촉하지 않고 회의(안건발생) 시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동시 자동 위촉 해제되도록 함
- 위원회 구성 시 "특정 성별 60% 초과 금지" 규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수
 - 신설 또는 재구성 위원회는 한쪽 성이 60%를 넘지 않도록 구성

■ 위원회 정비기준

정비대상 위원회 ■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로 필요성 감소 ■ 위원회 기능 상실 또는 설치근거 소멸의 경우 ■ 다른 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·중복되는 경우 ■ 근거법령이나 주관부서가 동일한 경우 ■ 실·본부·국별 다수의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 ■ 목적·기능상 필요하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 ■ 비상설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- 안건 발생 시에 구성하고 회의 종료 시 해산

폐 지

○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

- 특별한 사유 없이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
- ※ 상기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과위·실무위 등 하부회의체의 출석회의 실적이 활발한 경우는 존치 여부 재검토

○ 설치목적 달성 또는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

- 존속기한 도래, 기능변경 등으로 인해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
- 활동은 이미 종료했으나 입법적 조치(위원회 근거규정 삭제)를 하지 않은 경우
- ※ 조례, 규칙 등은 개정 및 폐지 추진, 법령 등은 해당부처에 개정 및 폐지 건의

○ 설치근거만 있고 장기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

- 설치근거는 있으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위원을 위촉하지 않는 경우

통·폐합

○ 유사·중복 위원회

-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경우
- 기능은 다르나 심의대상이 동일하여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경우
- 동일한 법령 내에 두개 이상 위원회 근거규정이 있고 기능을 통합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
 - ⇒ 실·국·소의 주기능(공통) 위원회로 통폐합

○ 실·국·소별 다수의 단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

- 수요가 있을 때 행정기관이 위원회에 자유롭게 의견을 물을 수 있고,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상 흠결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로 위원 회의 자문 결과가 행정기관을 기속하지 못하는 위원회
 - ⇒ 폐지 후 T/F(Task Force)형 회의체 형식으로 운영하거나 실·본부·국 단 위 또는 시 단위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

《 유사·중복 기능 개별 법령 위원회 통합 운영 요령 》

구 분	통합 운영 요령
법령 강행	·통합운영 조례 제정(X)
+ 법령 강행	·유사 기능 위원회 간 위원풀 구성·운영은 가능
법령 강행 + 법령 임의	·강행 위원회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기능을 확대하여 임의·조례 위원회 기능을 통합 수행 ·강행 위원회 근거 조례 보강(ㅇ), 통합운영 조례 제정(X)
법령 강행	예> 문화재위원회(법령 강행), 산성위원회(조례) →
+ 조례	문화재위원회(통합) : 산성위원회 기능 수행
기 타	 · 법령 임의 + 법령 임의, 법령 임의 + 조례, 조례 + 조례 위원회는 통합 운영 가능 · 통합운영 조례 제정(○)

* 강행 위원회: 개별 법령에서 세부 명칭·구성·운영방법을 규정하면서, 'ㅇㅇ위원회를 **둔다**'고 강제하고 있는 경우

** **임의 위원회**: 개별 법령에서 **명칭 없이** '~를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**둔다**'고만 하거나, 'ㅇㅇ위원회를 **~ 둘 수 있다**'로 임의 규정화하고 있는 경우

비상설화

○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비상설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위원회

⇒ 비상설 위원회(안건 발생 시에 구성하고 회의 종료 시 해산)로 운영 (예시) "위원은 구청장이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하며…"

< 개정 전 >	< 개정 후 >
① 구청장은 **** 사업의 자문을 위해…	① <좌 동>
****운영위원회를 둔다.	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 임할 수 있다.	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 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(개정)

🔲 정비대상 위원회

○ 정비대상 선별기준

- 최근 3년간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<19개>
- 동일한 법령에 근거하거나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<2개>
 - ※ 2015년도 회의실적이 없는 19개 위원회 중 법령상 강행위원회(10개), 3년간 회의실적 2회 이상인 위원회(3개)는 정비대상에서 제외

○ 정비대상

 정비구분	이이들네		회의실적			규정방식	부서
(정비내용)	위원회명	'13년	'14년	'15년	근거	규정명	의견
	청담·압구정패션 특구추진위원회	0	0	0	조례	강남구 청담·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	불구용
	공시중 교통소통대책심의 위원회	0	0	0	조례	강남구 도로점용공시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	불수용
회의실적 저조	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	0	0	0	조례	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	불수용
(폐지,비상설)	자원봉사진흥 위원회	0	0	0	조례	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	수용
	강남 인강 자문위원회	0	1	0	조례	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	불수용
	건강도시운영위 원회	0	0	0	조례	강남구 건강도시 기본조례	불수용
동일법령에	평생교육협의회	1	1	1	강행	평생교육법	
근거 (통합운영)	평생교육기관장 위원회	1	1	1	조례	(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)	불수용

○ 정비내용 : 자치행정과 "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" 개정 추진

Ⅲ 위원회 관리 시스템 현행화

- 내부행정시스템 틈새업무 위원회 관리 메뉴 현행화
- 위원회 현황 입력



★ 총 <mark>75</mark> 건이 조회되었습니다.

순번	위원회명	소관부처	성격	부서
75	강남구정산문편집위원회	강남구	심의	공보실
74	강남구공작자윤리위원회	강남구	의결	감사담당관
73	강남구 주요시책심의회	강남구	심의	기획예산과
72	소송심의회	강남구	의결	기획예산과

○ 위원회 구성원 입력

구성원 정보관리

*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 입력항목 입니다.

+ 위원회명	강남구 주묘시책심의회	•	
• 01書	중복화안	*생년월일	1 III
선별	-선택 - ▼	+ 직업	
• 직위	-선택 - ▼		
+ 위촉방법	-선택 - ▼		
주소	주소검색		
			(나머지 주소를 입력해주세요.)
전화	-선택 - ▼	핸드폰	-선택 - ▼
• 위촉일		해욕일	
- 임기만료일		· 위원구분	-선택 - ▼

○ 정비내용

☞ 5월 틈새업무(위원회관리) 기능개선 후 부서별 위원회 담당자가 위원회 정보(현황 및 구성원) 입력 철저

Ⅳ 위원회 조례제정

■ 강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

- 제정사유 : 강남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·투명성·효율성 향상에 기여
 - 201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

○ 주요내용

- 위원회 설치 시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 마련
- 위원 위촉 시 중복 위촉 및 장기 연임 제한 규정 마련
- 타 지자체 사례
 -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: 제2조 1항,2항

< 위원회 설치 사전협의 >

제2조(위원회를 설치할 때 사전협의절차) ①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민관협력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3.12.> 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민관협력담당관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6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조례 제7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소관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3.12., 2016.1.14.>

-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: 제7조(위원회의 구성) 3항

< 위원 중복위촉 금지 >
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야 하며,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○ 향후계획

- 2016. 5월 초 : 별도 방침수림

- 2016. 5월 말까지 : 입법예고(2주)

- 2016. 6월 초 : 조례규칙심의회

- 2016. 6월 경 : 강남구의회 상정 및 의결

- 2016. 7월 경 : 조례안 공포 및 시행

Ⅴ 추진 일정

- 2016. 4. 28. 위원회 정비관련 의견제출(소관부서)
 - ※ 붙임 1: 위원회 정비 검토의견서
- 🔲 2016. 5. 4. 위원회 정비계획 확정·시달(기획예산과)
- 2016. 5 ~ 자체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(소관부서)

Ⅵ 행정사항

- 위원회 정비 방향에 따라 위원회 정비(폐지, 통폐합, 비상설화) 시 기획예산과 통보 ----- 전부서
- 틈새업무 위원회 관리 메뉴 기능개선 ---- 전산정보과
- 5월 틈새업무(위원회관리) 메뉴 기능개선 이후 부서별 위원회 정보 입력 철저 ----- 전부서

붙임 : 위원회 정비 소관부서(6개부서) 검토의견서

[붙임1]

위원회 정비 검토 의견서

위원회명	정비유형	검토의견	부서
강남 청담·압구정 패션특구 추진위원회	현행유지	 ● 특구 추진위원회는 특구 특화사업 추진계획 및 결정·집행 등의 과정에서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, ○ 특구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, 특구 의홍보 및 특구 발전 방향 제시 등 특구 운영을 위한 기능을 수행함. ○ 특구 특화사업 중 중단 사업 발생, 특구 운영기간종료 등으로 인하여 최근 회의실적은 저조하나, ○ 2015.12월 특구 운영기간 연장(~2019년)이 승인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 위하여 특구 추진위원의 상시 자문이 필요한 만큼 위원회 정비 후 기존대로 운영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됨. 	지역경제과
강남구 공사중 교통소통대책심의 위원회	현행유지	○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나,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9조2항 관련 긴급한 도로점용 공사 발생시 교통소통대책 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현행대로 상설로 유지함이 타당함	교통정책과
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	현행 유지	○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개발행위전 자연 재해위험 및 재해발생을 시전에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적기에 검토가 이루어지기 위해 상설운영이 비람직한 것으로 사료됨(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상설 운영되고 있음)	치수과
자원봉사 진흥위원회	비상설 운영	○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, 제20조에 근거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 2년 (한차례 연임 가능)의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음 ○ 자원봉사센터를 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3년 간 자원봉사 진흥위원회개최 안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운영 실적이 저조하므로, 비상설 운영으로도 위원회 설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	자치행정과

위원회명	정비유형	검토의견	부서
강남구 평생교육협의회	현행 유지	○ 평생교육법 제14조(시·군·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)에 의한 위원회로, 2013년 '평생학습도시'로 지정된 이후 평생학습 정책 수립 및 사업방향 제시,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발전방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·조정 및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,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임.	교육지원과
강남구 평생교육기관장 위원회	현행 유지	○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유 관기관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 및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의 실질적인 실행에 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 평생학습 정책의 협 의·조정 및 자문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평생교 육협의회와는 달리 실제 평생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에 관한 논의를 주로 수행 하고 있어 현행유지가 바람직함.	교육지원과
강남인강 자문위원회	현행유지	○ 강남인강 자문위원회는 강남인강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 한 위원회로 강사 채용 시 강의 내용의 전문 성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2 년 1회 격년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○ 강남인강 강사는 계약기간이 2년으로 2015년 도에는 개최 실적이 없으며, 금년 하반기 강 사채용 시 위원회를 개최 할 계획이며, 또한, 계약기간 동안 강사 개인 사유로 사의를 표할 시 신규강사 채용이 불가피하여, 인강 자문위 원회를 상설운영하여야 함.	교육지원과
건강도시 운영위원회	현행 유지	 현재는 건강도시 사업 관련한 이슈가 없어 위원회 회의 실적이 저조하나, 본 위원회는 건강도시 발전 및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로써 현재와 같이 '상설'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기존 조례에 정기회의(연1회)와 임시회(위원장이 필요시 소집)로 규정되어 있었으나, 저조한 회의실적 등을 고려하여, 정기회의 규정은 삭제함(2015.09.25.개정) 그러나, 향후 건강도시 인증추진 등 건강도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, '상설'로 위원회를 유지하고자 함 	보건행정과